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719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5. 5. 29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정순기, 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개인정보 등의 보호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1)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, 제41조

2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: 2025. 5. 30. ~ 2025. 6. 5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만성질환”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.

가. 고혈압

나. 당뇨병

다. 이상지질혈증

라. 심뇌혈관질환

마.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

2. “만성질환 예방관리 등”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, 건강검진, 진료, 교육·홍보, 등록관리, 환경구축, 연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서울특별

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.

3. “건강관리”란 질병예방, 조기발견·치료, 예방교육, 영양개선, 건강생활실천,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2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
3.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

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·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.

1.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
2.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
3. 만성질환의 조기검진
4.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
5. 금연, 절주,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

6.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

7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등록관리) 구청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개인정보 등의 보호)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9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포상)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, 단체,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보건의료기본법」

[시행 2025. 4. 17.] [법률 제20922호, 2025. 4. 17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17.]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(慢性疾患)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 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17.]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[시행 2024. 8. 17.] [법률 제19645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